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
| 2023. 2. 2. |
| 복지문화위원회     |

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장호섭 의원 등 9명(장호섭, 박종길, 권숙자, 남현주, 이선주, 이진환, 김장관, 박정환, 정순옥)
- 발의일자: 2023. 1. 20.(금)
- 회부일자: 2023. 1. 20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(2023. 2. 2.)

## 2. 개정이유

-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, 달서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관계법령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 정의함(안 제2조제9호)
- 나. 위원회 운영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12조)
- 다.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(안 제13조)
- 라. 우선조치 및 간사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(현행 제14조 및 제15조)

### 참고사항

관계법령: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, 제52조, 제53조의2 및 제59조제1호  
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13조 및 제54조

추계: 미첨부 대상

고(2023. 1. 20. ~ 2023. 1. 30.)결과: 의견 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, 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 중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학대피해아동쉼터(이하 “쉼터”라고 함)는 2021년 9월 달서구 내 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설치를 대구시에 요청하여 같은 해 12월 설치비 및 운영비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고, 2022년 3월 25일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것으로 그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고
-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음.
- 또한 안 제2조제9호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「아동복지법」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한 기관임을 명시함으로써 쉼터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그 정의의 목적이 있음.
- 이처럼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, 정책적 필요에 따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됨.

## 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